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 6. 1.)에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산업 재해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요구 시) 및 근로자 주지 의무 신설
- 법 위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 유예) 등

붙임: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근로감독관

유민철

산재예방감독과 전결 2026. 6. 10.

장

천수아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5198

(2026. 6. 10.)

접수

우 0417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도화동 251-1 근신빌딩 별관) 6층

/ <http://www.moel.go.kr/seoulseobu>

산재예방감독과

전화번호 02-2077-6172

팩스번호 02-6915-4335

/ ymc011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